

#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제42조의 요약

- 법인의 자산은 법인세법상 특별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당초 취득원가 혹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함.
- 자산·부채에 대한 임의평가증액·평가감액은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전 금액으로 모든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익금을 계산함(임의평가증·평가감금액은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에 기록되더라도 세무상 아무런 의미없음).
- 특별히 평가증금액이 인정되어 세무상 손금이나 익금되는 경우 : 보험업법·특별법상의 평가증
- 기업활동 순환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증·감 적용되는 경우
  - ① 재고자산의 법정평가 평가증·감 손익인정 → 원가법·저가법 중 선택,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 선택 신고함. 무신고, 임의변경, 신고방법 비적용시 선입선출법 적용금액과 회사계상액 중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손익반영함.
  - ② 유가증권(주식 등 채권)의 법정평가 후 평가손익인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신고함(채권은 개별법도 가능). 무신고, 임의변경, 비적용시 총평균법 적용금액과 회사계상액 중 큰 금액으로 함(장부상 금액과 차이분은 손익반영).
  - ③ 금융회사 및 일반법인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법정평가후 평가손익인정(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는 2010년까지 평가대상 안됨) → 종료일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차감손익은 당기 손금·익금 인정함. 연말평가손익, 연중상환손익 모두 당기 손익반영됨. 해외사업(지점 등)의 환산손익은 현행 환율법·혼합법 등 적용
- 부실자산에 대하여 감액(-) 평가하여 손금산입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당기 영업외 비용처리한 손금산입액=재고계상액○처분가능시기),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사용불능 등으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당기 특별손실처리 손금산입액=고정자산 장부잔액○시가평가액),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창업투자사 등이 보유한 창업법인발행주식 중 부도법인주식(당기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액=주식계상액○시가평가액이나 회생인가결정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주식 등), 주식 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시가평가액 1,000원 이하는 1,000원으로 평가)
- 자산·부채평가명세서와 각종 조정명세서(재고자산평가, 유가증권평가,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자산·부채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 : 임의평가차익 → 익금불산입 ⊖ 유보후 향후 익금반영, 임의평가차손 → 손금불산입 ⊕ 유보후 손금추인  
 법정평가 적용한 손실·비용·감액 → 손금산입 ⊖ 유보후 차년도 이익반영  
 법정평가 적용한 이익·수익·증액 → 익금산입 ⊕ 유보후 차년도 손실반영

●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Ⅰ. 법인자산·부채평가방법 개요 (법 제42조제1항)

### 1. 자산·부채의 취득원가·평가전 가액

(법 제42조제1항제2호)

#### ① 법인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의 평가전 금액대론만 인정

법인이 보유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액·취득원가 등을 근거로 손익귀속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평가증), 감액(평가감)한 경우도 평가한 바로 그 사업연도나 그 이후의 모든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 금액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취득원가 등 객관적 입증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에 근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본 조 제41조의 자산취득가액의 매입·취득원가주의를 세법상 적용한다는 뜻인바, 임의적 평가손익을 완전히 배척하고 평가하기전 장부가액, 즉 전연도까지 이미 과세소득 계산상 적법하게 인정·반영된 금액으로만 세법상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자산부채에서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평가증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평가감액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업법 등 특별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 세법 및 관련 시행령(제73조) 등의 별도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증·감액 등은 취득원가나 평가전 가액 등의 적용개념에 관계없이 평가증·감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그대로 적용한다.

#### ② 장부금액·취득원가주의 적용대상과 세무상 처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보험업법상 고정자산평가증·채고자산·유가증권 등) 이외에 모든 자산·부채의 평가증액·감액(기존 장부가액 혹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증액 혹은 감액하는 경우)인 경우도 세법상 자산·부채장부가액은 평가증된 금액이 아니고 평가하기 전의 세법상 반영가액(주로 취득원가 및 상각후 장부잔액임)으로 한다. 평가전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등을 말한다. 취득원가주의, 평가전 금액 적용대상자산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을 요약한다.

◎ 임의평가증·감한 경우 → 이를 부인하고 평가전 금액, 취득원가 등을 세무상

자산·부채액으로 함(계속 적용하므로 회계상 평가증·감 반영하면 세무상 부인되어 유보되며, 향후 연도에 계속 세무상 부인액 주인공제로 연결됨).

- ◎ 임의평가증하여 회계상 (차) 자산 xxx, (대) 평가익 xxx 반영한 경우 → 평가익에 대해 익금불산입시 △유보하면서, 향후 평가증액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상쇄하여 나감. 평가익을 특별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도 ⊕익금산입, 기타로 세무처리하고 ⊖익금불산입, △유보로 한 후 자산감가상각비와 상쇄처리하여 나감.
- ◎ 임의평가손하여 회계상 (차) 평가손 xxx, (대) 자산 xx 한 경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시킨 후 향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과 상쇄시킴.

③ 취득원가 아닌 평가증·평가감인정 예외 분야

평가연도 및 평가후 다음 사업연도 모두에 대해 취득원가·기존장부가액이 아니고 평가증액·평가감액한 대로 세무처리하는데, 과세소득계산이 가능한 거래 및 관련 회계·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보험업법·기타 특별법률상 고정자산의 평가증

- ① 평가증액만 세무상 인정하며 평가감은 인정안됨. 평가증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자기자본계정에 가산(+)함. 익금산입 ⊕유보됨.
- ② 자산의 평가차익은 본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제4호에 의거 익금산입되는 수익의 범위에 속하는바,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상 평가증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추가부담됨(평가증액을 기업회계상 특별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정 불필요하며, 기타 자본잉여금 등 자기자본계정에 반영하였다면 익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임).
- ③ 본 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제1호 규정에 따라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되는데, 단서에서 본 조(제42조)제1항각호의 평가차익은 제외, 즉 본 조의 평가차익은 익금산입(=익금불산입의 예외) 한다는 뜻이 되어 법률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등 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 과세됨. 그러나 법적 적용이 아니라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산입안됨.

◎ 결국 자산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산입되는 경우 : ① 보험업법상 고정자산평가증액, ② 기타 특별법상 평가증액, ③ 채고자산·유가증권 등의 평가이익 등 임(본 법 시행령 제73조 해당 자산).

- ◎ 기업이 평가차익계상해도 익금불산입하는(익금산입안되는) 경우 : ① 토지외의 모든 자산의 재평가차익, ② 각종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보험회사 아닌 모든 회사), ③ 재고자산 등 특별규정한 경우 이외의 모든 자산평가이익 등

## 2. 자산·부채의 취득원가 예외분야 (법 제42조제1항제2호)

### ① 보험회사 고정자산평가증 등

자산·부채의 당초 장부원가·취득원가 적용에서 예외 적용되는 분야는 보험업법·기타 법률상의 고정자산의 평가증의 경우이다. 이러한 재평가 등은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상 재무구조개선과 물가변동의 회계반영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평가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 평가증인 경우만 세법상 인정하여 익금산입 등 과세한다.

### ② 재고자산·유가증권·외화자산의 취득원가주의 예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상 전기·당기·차기 등에 걸치면서 기간손익 구분(cut-off)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대여 취득원가·평가전 장부가액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세법상 원가주의·평가전 장부계상액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령상 특별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이를 적용한 평가금액대로 손금 혹은 익금산입될 계정과목금액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들은 모두 강제 손금 익금조정항목이다.

- ◎ 재고자산 : ① 제품, 상품,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 소유부동산(금융업 등 재고자산계정에 포함된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아니고 유가증권으로 봄) : 세법대로 반영  
 ②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세법상 계산금액으로 손익반영됨.
- ◎ 유가증권(주식·채권·어음·외화증권 등) : 일반유가증권, 상품목적 유가증권, 금융회사의 재고계정,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집합투자재산, 보험업법상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변액보험계약),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이나 기타 고객예탁 유가증권도 모두 해당됨 → 세법상 평가금액에 의거 손익반영됨.
- ◎ 금융회사 및 일반법인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매매기준율 등에 의한

환율평가차손익이 모두 당기손금·익금 그대로 반영됨.

- ◎ 금융회사 및 일반법인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통화스왑)⊕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반영함.
- ◎ 그러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2010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법률개정으로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인정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 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 가. 주식 등
  - 나. 채 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009. 2. 4 개정)
  -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009. 2. 4 신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2010. 12. 30 신설)

#### ▲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 3. 각 자산·부채 평가방법 (법 제42조제2항)

#### ①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별 자산의 세법상 평가방법 비교

각 자산·부채별로 취득원가(원가)·정상시가(시가) 혹은 세법상 평가금액(평가)으로 손익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차			대		
과 목	평 가 방 법		과 목	평 가 방 법	
	세 법	기업회계		세 법	기업회계
• 당 좌 자 산	원 가	원 가	• 외 화 부 채	평 가	평 가
• 유 가 증 권	평 가	시 가	• 매 입 채 무	원 가	원 가
• 외 화 자 산	평 가	평 가	• 비 유 동 부 채	원 가	원 가
• 재 고 자 산	평 가	원 가	• 자 기 자 본	원 가	원 가
•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원 가			
• 유 형 자 산	원 가	원 가			
• 무 형 자 산	원 가	원 가			

## II.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시행령 제74조)

### 1. 재고자산의 범위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중요성

#### 1) 재고자산평가의 개요와 재고자산의 범위

##### ①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중요성

자산의 취득가액은 본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매입가액 합계액, 제작관련 원가합계액, 취득당시 시가 및 장기할부조건 구입시 현재가치로 평가한 원가금액 등으로 하며, 재고자산가액도 이러한 원가금액으로 평가한다.

제조업·상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자기의 계속적인 수익창출 영업활동 중 재고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점에서 보면 항상 보유중인 재고자산은 있게 마련이다.

재고자산은 소비되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손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이의 적절한 기록과 평가는 법인의 납세의무부담액계산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비되지 않고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므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세법 적용하여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②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한 기본요소인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의 하나이므로 기업의 이익 및 과세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재고자산은 기업이익을 계산하는 전 사업연도에 걸쳐 영향을 주며, 향후의 사업연도에 영향을 주므로 이의 확정은 적절한 납세의무이행의 선결요건이 된다.

#### ③ 재화·용역 생산과정 중 통상적으로 소비되는 유형동산

재고자산이란 법인의 정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외부에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판매목적으로 생산과정중에 있는 자산과 판매에 제공될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어야 하는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의 유형의 동산을 모두 말한다.

#### ④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위의 재고자산 흐름은 우선 원재료 → 재공품 → 반제품 → 제품 → 상품 등의 과정으로 흐르는데 모두 외부에 판매를 통해 유출되는 과정에 있는 자산들이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 재고자산이냐의 판단은 그 자산의 고유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통상 고정자산으로 생각되는 건물이나 토지 또는 기계라 할지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고정자산이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된다는 뜻이다.

#### ⑤ 생산에 투입되는 흐름의 개념

모든 자산은 법인의 용역잠재력으로서 미래에 사용소비됨으로써 과세소득을 창출한다. 특히 재고자산은 법인의 정상적 업무흐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재화·용역대금이 현금으로 수금됨으로써 종결된다.

또한 법인의 사업종류나 업무특성에 따라 재고자산은 여러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제조업의 제품, 상기업의 상품, 건설회사의 건설자재, 부동산업의 토지·건물 및 성육산업의 동식물 등을 들 수 있다.

#### ⑥ 재고자산과 설비자산의 구분방법

판매목적의 재고자산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제조·가공 등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설비자산이 있다. 설비자산은 기업회계상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라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사용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재고자산은 원가계산절차를 통하여 그 판매 또는 소비된 수량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양자의 분류내용에 따라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내구성 소모품과 같은 자산들은 재고자산 쪽으로 분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데 당기중 소비한 경제가치를 측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일반적이며 손금산입방법을 매기 계속적 용하여야 한다.

#### ⑦ 재고자산분류방법의 계속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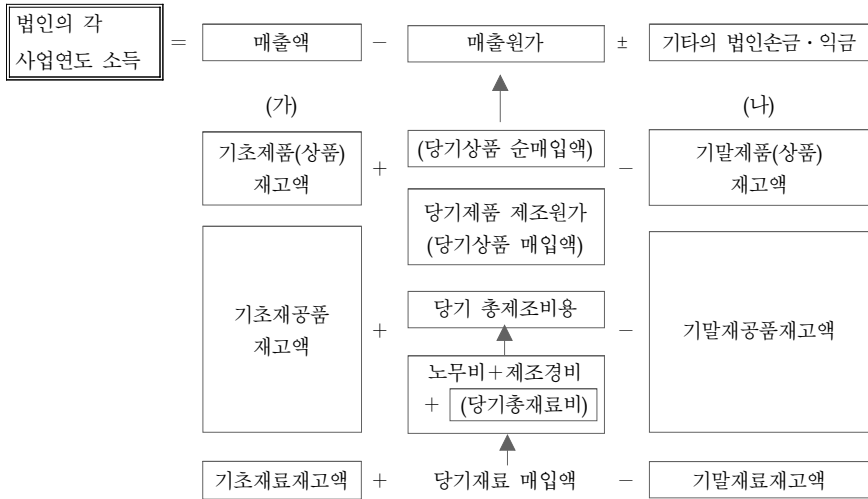
재고자산 분류와 설비자산과의 구분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면 세무상 별 문제가 없다.

원래 저장품 등은 재고자산으로서 수불관리에 따라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에 배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입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당기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하여 상각금액에 반영된다.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행에 따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⑧ 법인의 과세소득결정 과정과 재고자산 금액계산

기업회계상의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이익산정과정을 재고자산을 중심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도표에서 (가)와 (나)의 재고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당기 사업연도 및 차기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까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적용방법

① 원가법·저가법 중 법인의 임의적 선택후 세무서 신고하여 적용

제품 및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원재료 등의 소비가액 및 재고자산의 기말재고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일정한 계산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라 한다. 본 조는 이러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인의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세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가법, 저가법 중의 어느 하나로서 원가법

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으로 구분되고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② 재고자산 종류, 자산별·영업장별 구분하여 다른 평가방법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각 호(시행령 제73조제1호가·나·다 등 구분별)별 개념인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영업장별로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법인이 영업장별과 영업종목별로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하고자 하려면 영업장별 및 영업종목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밖에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각기 별도 동일방법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

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 각목별, 각자 다른 방법적용 연결관계

○감사업장

평가방법	자산종류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저가법				

• 을사업장은 감사업장 방법과 완전히 서로 다른 평가방법 적용가능

3)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절차

여러 가지의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법인이 자기의 업종 및 영업활동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채택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반드시 소정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이 자의적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수시 변경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일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모두 포괄하는데 여기서는 재고자산 등이라 표현한다.

**(1)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의 신고기한****① 최초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은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설립일과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일반적으로 결산종료일 ⊕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사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법인이 신규사업장을 개설하고 기존사업장과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당해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된다. 이로써 신규사업장의 개설연도부터 다르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평가방법 변경시 변경적용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되는 날**

기존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직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02년 사업연도부터 변경적용하려면 02년 12월 31일에서 3

개월 이전인 01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제출하여야만 02년부터 변경대로 가능하다. 적법 3개월전에 신청 못하고 늦게 제출되면 그 다음 03년부터는 변경적용할 수 있다.

**(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의 무신고나 불성실 임의적용시 선입선출법 적용**

① 신고없는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 강제적용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고, 그 후의 사업연도부터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법인설립시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소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세무상 선입선출법이 강제적용되던 법인이라도 그 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처음으로 신고하면 이는 변경신고로 간주되므로 제대로 기간(전 3개월)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적법 변경신고기한(전 3개월)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안했어도 변경방법은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적용할 수 있다.

② 무신고하거나 신고방법 이외의 평가 및 적법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의 임의적용 및 평가방법 이외의 적용 혹은 계속적 적용이 아닌 불규칙 적용의 경우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임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방법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법신고한 평가방법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적법한 변경신고기한내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법 변경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이 회계결산상 적용한 방법에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계속적 물가상승의 상황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이 비교적 높은 가액으로 계산되고 제조원가가 낮은 원가로 대응되므로 과세소득이 비교적 높게 계산되는 방법이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 ③ 법인의 자체 계산평가액이 큰 경우 법인이 계산한 큰 금액으로 계산

무신고, 기타 다른 방법 임의적용 및 적법변경신고 안한 경우 등의 선입선출법 강제적용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비교적 높게 계산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인이 임의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른 계상 금액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다면 과세목적이 자동달성되므로 구태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 단서는, 신고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적법한 변경신고없이 평가한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상의 금액이 선입선출법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의 상황 경우	법인계상금액 <sup>㉠</sup>	선입선출법금액 <sup>㉡</sup>	신고방법금액 <sup>㉢</sup>	적용
최초법인세신고기한내 적법신고·적법변경신고	㉠ 금액	㉡	㉢	㉠
무신고	㉠	㉡	㉢	㉡
신고 이외 방법 평가	㉠	㉡ 크다 ≥ 작다 ㉢		㉡
신고 이외 방법 평가	㉠	㉡ 작다 < 크다 ㉢		㉢
적법변경신고없이 평가방법 변경한 경우	㉠	㉡ 크다 ≥ 작다 ㉢		㉡
적법변경신고없이 평가방법 변경한 경우	㉠	㉡ 작다 < 크다 ㉢		㉢

④ 적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하면 최초 연도는 선입선출법 적용하고 다음 연도부터 신고평가 방법 적용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최초 과세표준 신고기한내까지와 변경연도 종료 전 3개월내인 적법신고기한내(12월말 법인이면 전년 9월말)에는 신고못하고 적법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최초 연도는 선입선출법 등을 적용한다. 대신에 그 후 연도부터 변경하려는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세무계산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매년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제출

① 법인세신고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신고시 제출하거나, 적법변경희망시 종료일 3개월전에 낸다. 또한 매년의 법인세신고서제출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제출한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 1) 재고자산의 수량결정의 중요성

법인의 가장 중요한 손금항목인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의 최종적 소비액으로 결정되며, 재고자산의 최종적 소비액의 크기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매출총이익의 및 영업이익의 크기가 결정된다. 여기서 손금으로서의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소비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여 각각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총재고자산원가를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고자산의 평가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란 결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재고수량과 단가가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다. 즉, 재고자산원가는 「재고수량×단가」라는 계산산식으로 표시되는데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재고실사법과 계속기록법 및 역산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연말부족분·초과분 파악을 위해 재고실사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모든 재고자산의 입고수량과 출고수량을 재고자산의 항목별로 기록함으로써 기말의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재고자산의 명세와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입하여 잔액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상 장부재고법 및 항구재고법이라고도 불리며 통제목적상으로는 재고실사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에 나타난 재고자산의 수량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재고수량을 실사하여 실제재고수량과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나타난 재고수량과의 차이를 재고자산감소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결산기가 아닌 평소에는 증발이나 도난 등의 수량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2) 재고실사법

재고실사법(Actual or Physical Inventory Method)은 재고자산의 입고수량만을 기록하고 출고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실제 재고수량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으로 기말에 현품을 실지조사하여 실제 재고수량을 확인한다. 따라서 전기이월수량에 당기매입수량을 합제한 수량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량을 차감한 수량은 모두 당기의 출고수량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이 방법에서의 당기출고수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다.

◎ 당기출고수량=(기초수량+당기입고수량)-기말수량

## (3) 역산법

제품의 완성수량과 원재료의 소비수량과의 관련성 및 관계비율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사용소비량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실제대로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재고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방법이지만 간편할 수 있다.

# 3. 재고자산의 금액평가방법

### ① 원가법 및 저가법 중 선택적용

앞에서 설명한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에 따라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수량이 결정된다. 또한 당기에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비된 재고자산의 수량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량에 대하여 적절한 가액을 부여하는 문제만 남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입고된 재고자산의 단가는 일반적으로 균일하지 아니하므로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느 입고시점의 구입단가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고, 거래발생시의 취득원가를 장부상 수정없이 기장하는 역사적 원가주의의 예외로서 결산당시의 시가로 기말재고자산가액을 평가 하는 시가법의 적용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원가법 및 저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제금액을 장부시제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1) 원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 ① 세법상 원가법의 유형

원가법이란 실제의 거래시 장부에 계상된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하여 사업연도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이 열거 규정되어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그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기업회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적용된다.

## ② 기업회계상 원가법의 개념과 유형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평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일반기업회계 제7장 【재고자산】

7.4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7.12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7.13 문단 7.12가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1) 개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개별법이란 자산의 개별적 취득가액을 구하여 산출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의 실제의 흐름을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이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의 확정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재고수량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실제 적용은 비현실적이다. 보석·주문제작품목 등에 사용된다.

#### (2) 선입선출법의 개념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나목)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다. 매입순법이라고도

하는데 재고자산 중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고 최근에 매입하여 입고된 것은 나중에 출고되어 항상 기말재고로 남는다. 일반적인 업무흐름대조이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결국 재고로 남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최근일에 매입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름·용액 등과 같이 투입관으로 들어와서 송출관으로 나가는 흐름재고 등에 주로 적용된다.

### ① 선입선출법의 사례

수량만을 계속기록법으로 기록하고 재고자산의 금액은 월말에 재고실사법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사례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구 입	판매 또는 사용	잔 고
8. 2	(2,000 @₩400)		2,000단위
8. 15	(6,000 @ 440)		8,000단위
8. 19		4,000단위	4,000단위
8. 30	(2,000 @ 415)		6,000단위

여기서 8월 31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6,000단위는 가장 최근에 구입된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러한 계산은 재고자산이 실제 재고실사법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일 자	재고수량	단위원가	총원가
8. 30	2,000	₩415	₩ 830,000
8. 15	4,000	440	1,760,000
	<u>6,000</u>		<u>₩ 2,590,000</u>

만일 계속기록법이 수량뿐 아니라 금액에 대하여도 함께 적용된다면, 재고자산이 판매 또는 사용될 때마다 관련 소비원가는 함께 기록되므로 8월 19일 출고된 4,000 단위는 8월 2일과 8월 15일에 구재고자산가액 입고된 재고자산

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이 소비원가가 계산된다.

[계속기록법(수량, 금액 동시 기록)]			
일자	구 입	판매 또는 사용	잔 고
8. 2	(2,000 @₩400) ₩ 800,000		2,000 @ ₩400 ₩ 800,000
8. 15	(6,000 @ 440) 2,640,000		2,000 @ 400 6,000 @ 440
8. 19		2,000 @ ₩400 2,000 @ 440	4,000 @ 440
8. 30	(2,000 @ 415) 830,000		4,000 @ 440 2,000 @ 415

**(3) 후입선출법의 개념**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나간다는 뜻이다. 즉, 최근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고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기말재고로 남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다.

투입문과 반출문이 같은 창고재고용 고정성분, 바닥야적, 지하창고적재 등의 재고자산에 주로 사용된다.

① 후입선출법의 사례

앞의 사례를 따른 후입선출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속기록법(수량만 기록)]			
일 자	구 입	판매 또는 사용	잔 고
8. 2	(2,000 @₩400)		2,000단위
8. 15	(6,000 @ 440)		8,000단위
8. 19		4,000단위	4,000단위
8. 30	(2,000 @ 415)		6,000단위
	10,000단위	4,000단위	

8월 19일 사용된 4,000단위는 8월 30일에 구입된 2,000단위와 8월 15일에 구

입된 6,000단위 중 2,000단위가 소비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말재고수량 6,000단위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재고자산이 재고실사법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

[재고자산가액]			
일 자	재고수량	단위원가	총원가
8. 2	2,000	₩400	₩ 800,000
8. 15	4,000	440	1,760,000
	6,000		₩ 2,560,000

만일 계속기록법이 수량뿐만 아니라 금액에까지도 함께 적용된다면, 재고자산이 판매 또는 사용될 때마다 관련 소비원가는 함께 기록되므로 산출되는 기말재고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결과와는 다른 금액이다.

[계속기록법(수량, 금액 동시 기록)]			
일자	구 입	판매 또는 사용	잔 고
3. 2	(2,000 @₩400) ₩ 800,000		2,000 @₩400 ₩8,000,000
3. 15	(6,000 @ 440) 2,640,000		2,000 @ 400 } 6,000 @ 440 } 3,440,000
3. 19		(4,000 @₩440) ₩1,760,000	2,000 @ 400 } 2,000 @ 440 } 1,680,000
3. 30	(2,000 @ 415) 830,000		2,000 @ 400 } 2,000 @ 440 } 2,510,000 2,000 @ 415

#### (4) 총평균법의 개념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총평균법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총기간평균법이라고도 한다. 일정기간에 판매된 재고자산과 기말에 잔존하는 재고자산의 총 가격을 총 숫자로 나누어 계산되는 가중평균한 단일단위원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중평균한 단일단위원가는 기초재고자산의 원가와 당기매입원가의 총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각 재고자산 품목별 단위 원가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평균에 의한 가중평균 단위원가]**

$$\frac{(\text{기초재고가액} + \text{당기총구입가격합계액})}{(\text{기초재고수량} + \text{당기총구입수량합계})} \\ = \text{총취득원가합계액} \qquad \qquad \qquad = \text{자산의 총수량}$$

따라서 이 방법은 당해 기간의 매입총액을 알아야 평균원가를 구할 수 있으므로 기말에 가서야 평균원가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평균단가의 계산시에 수량만큼의 가중치를 감안하므로 단순평균법에 비하여 평균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① 총평균법의 사례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총평균법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재고조사법 - 총평균법]				
	일 자	수 량	단위원가	총구입원가명
기초재고	9. 1	1,000	₩380	₩ 380,000
구 입	9. 2	1,000	400	400,000
구 입	9. 15	6,000	440	2,640,000
구 입	9. 27	2,000	415	830,000
		10,000		₩4,250,000
총평균법에 의한 평균단가			$\frac{₩4,250,000}{10,000} = ₩425$	
9. 30의 기말재고수량		6,000단위		
9. 30의 기말재고자산원가			$6,000 \times ₩425 = ₩2,550,000$	

**(5) 이동평균법의 개념**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

이동평균법이란 총평균법과 같이 가중평균단위원가를 산출하는 개념으로서 일정기간의 평균원가를 기말에 가서 계산하지 않고 새로운 입고나 제조공정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출고시의 단위원가를 출고시마다 새로이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고관리 및 원가계산이 전산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변동단가를 계속 확정



할 수 있어 합리적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 ① 이동평균법의 사례

계속기록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동평균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속기록법 - 이동평균법]				
일자	구 입	판매 또는 사용	잔 고	
10. 2	(2,000 @₩400) ₩ 800,000		(2,000 @₩400) ₩	800,000
10. 15	(6,000 @ 440) 2,640,000		(8,000 @ 430)	3,440,000
10. 19		(4,000@₩430) ₩1,720,000	(4,000 @ 430)	1,720,000
10. 30	(2,000 @ 415) 830,000		(6,000 @ 425)	3,550,000

이동평균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새로 구입될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가 계산되는데 10월 15일에 6,000단위가 2,640,000원에 구입되므로 총 8,000단위(2,000단위+6,000단위)의 원가는 3,440,000(2,640,000+800,000)원이 되며, 그때의 평균단가는 430(3,440,000÷8,000단위)원으로 계산된다.

이 단가는 차후 새로운 구입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판매 또는 사용되는 재고자산의 소비원가로 사용된 후 10월 30일에 새로이 구입된 재고자산까지 감안한 기말재고자산 6,000단위의 평균단가는 425(2,550,000÷6,000단위)원으로 산출된다.

### (6) 매출가격환원법의 개념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바목)

#### ① 매출가격환원법

매출가격환원법이란 백화점·소매상·도매상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매입원가로 계속기록을 하거나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각각 별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는데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한 취득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매출가격환원법의 사례

예를 들어 앞의 사례로부터 상품 1개의 판매가격을 600원으로 하고 예상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을 판매가격의 30%로 잡으면 매출가격환원구입단가는 420원이다.

$$600 \times (1 - 0.3) = 420 \text{원} \dots \text{매출가격환원 구입단가}$$

따라서 만일 기말재고수량을 6,000단위라고 하면, 기말재고액은 2,520,000원이 된다.

$$420 \times 6,000 = 2,520,000 \text{원} \dots \text{기말재고액}$$

③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요건

매출가격환원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은 품목별로 재고조사표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품목별로 매출가격환원원가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원가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재고자산 단위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제품별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제품별로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밖에 매출가격환원법 적용시 원가가 매가보다 커서 원가율이 1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말재고자산이 매출예정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평가는 매출예정가액을 한도로 하여 평가하고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면 이를 무시한다.

## 2) 저가법

### (1) 저가법의 개념

① 시가와 원가 중 낮은 가액의 평가

저가법이란 시행령 제74조제1호의 취득원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원가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시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평가액 중 낮은 편이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 시가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계산된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 원가와 시가 중 저가로 선택한다.

#### ② 기업회계상 저가주의 적용

저가법은 회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평가방법의 계속적 적용차원에서는 일관성이 없으나, 기업회계의 건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은 취득원가보다 낮은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원칙규정하고 있다(즉, 기업회계는 취득원가를 근거로한 저가주의 강제규정임).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하면 계상된 원가대로 그대로 평가하여 미실현 평가이익을 계상하지 않는다. 시가가 원가보다 저하된 경우에만 시가로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16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 (1) 손상을 입은 경우
- (2)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 (3)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7.17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저가법의 적용방법

### ① 재고자산 수불단위별 개별적 계산

저가법은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현행 시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저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저가법 적용시 장부재고가액과 시가의 비교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각 항목별 및 수불단위별로 비교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도 저가법의 적용시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상의 저가법 적용에서도 재고자산 수불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저가금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결산일 현재 저가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은 원가법 적용이 원칙이면서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저가를 재무상태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가는 결산일 현재의 순실현가능가액이다. 법인세법상으로도 결산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의해 계산된 시가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형성의 결산일 1일의 가격으로 한다는 뜻으로 특이한 요인으로 인해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다.

### ③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구 분	세법상의 기준	기업회계기준
저가법 적용의 요건	원가법과 시가 중 낮은 가액 적용하는 신고에 한함(저가법 신고가 아니면 원가법 적용).	순실현가능금액이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상의 시가(순실현가능가)	순실현가액(추정판매 순귀속금액)
시가의 포함기간	결산일 현재 1일 가격	결산일의 순실현가능가액
손익의 반영방법	순금산입(⊖유보처리)	장부상 직접차감(감액함)

### 3)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차별적용가능

#### ① 자산종류별·영업장별로 차별적용가능

법인의 재고자산 보유현황은 그 종류나 장소·취득경위 및 구분개념 등에 따라 한 법인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법인의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음의 시행령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종류별과 영업장별로 각각 달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1) 재고자산의 종류별·각목별 차별적용

##### ① 완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각 호의 각목별 구분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 등의 각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성격의 재고자산도 별도의 각목으로 보아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착상품이나 미착원재료의 경우는 아직 취득과정중에 있는 자산이며, 향후 취득완료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원가가 투입 및 발생되므로 개별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이를 별개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개별법 등으로 평가하면 된다.

여기서 재고자산의 각목별의 구분 개념은 법인의 자체적 분류개념에 따르면 되는데, 재고자산의 품질·종류·규격·형태·메이커 등이 아니라 법인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 수불부상의 관리단위별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대분류로는 제품·상품을 하나로, 반제품·재공품을 하나로, 원재료를 하나로, 저장품을 하나로 하여 각각 다른 방법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반면에 일반통념상 판매가능한 상태의 제품이라면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법인제조공정상 더 이상의 공정이 필요없어 완제품상태로 되어 있으나 외부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친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는 반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2) 종류별·영업장별 차별적용

### ① 종류별·영업장별 다른 평가방법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각 영업장별로 독립채산하거나 독립회계를 실시한다면 각 영업장에 속하는 재고자산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각 종류별로도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각 상황, 원가흐름의 차이, 특성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 ② 종류별·영업장별 차별적용의 구분경료요건

보유 재고자산을 각목별·종류별·영업장별로 법인이 달리 평가하려면 그 종류별·영업종목별·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각각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평가방법 차별적용 기간단위

### ① 월별·분기별·반기별 평가방법의 인정

재고자산의 평가는 각 법인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고 있어 내부보고목적상 매월 단위로 원가계산을 하는 법인도 있다.

세법의 이론상으로 볼 때 1사업연도 단위로 재고를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이

를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한 경우에도 적절한 평가로 보며, 각 월별·분기별·반기별계산시 각 계산의 전기·당기·후기에 모두 같은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평가방법 차별적용의 임의적 가능성

재고자산 흐름과 원가계산 등은 모두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법인의 임의적 판단이 중요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은 법인의 임의이므로 이를 선택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법인의 손익 결정은 어느 정도 법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법상 열거된 평가방법 중 어느 것을 법인이 채택하느냐는 소정의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전적으로 법인의 선택에 따르게 되지만, 공인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은 감사의견의 한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평가방법을 무한정 선택적용할 수는 없으며, 재고자산의 성질상 그 개별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보석·서화·골동품 등의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4)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요약

지금까지 설명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 가 방 법	
평가 대상자산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무신고시	신고방법 이외방법 평가시, 변경신고 없 이 방법 변동시
• 제품 및 상품(매 매를 목적으로 하 는 부동산 포함)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선출법, 총평균법,	• 매매목적 부동산 만 : 개별법 • 기타모든자산 : 선	선입선출법 (부동산은 개별법) 신고한 평가방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제품 및 재공품</li> <li>• 원재료</li> <li>• 저장품</li> </ul>	이동평균법, 매출 가격환원법 • 저가법 : 원가 또는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선택하는 방법	입선출법 • 유가증권 : 총평균법	평가액이 크게 계산되는 큰 평가방법 (과세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
---	---	-----------------------	---

#### 4) 선입선출법 등의 법정평가방법 강제적용방법

##### (1) 법정평가방법의 강제적용

###### ① 적법한 평가방법 신고가 없는 경우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만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이 회계결산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금액에 관계없이 세무상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따로 계산한다. 선입선출법 등의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상된 재고자산가액이 법인장부상 실제 계상된 재고자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재고자산평가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선입선출법 적용가액이 회사의 회계계산금액보다 적다면 세무조정사항이 없다.

###### ② 신고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적법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세무상 과세소득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다).

###### ③ 선입선출법 등의 적용사례

무신고·불성실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사 례】

○ 총평균법 신고가액(당초) : 1,500,000



- 선입선출법 평가액 : 1,300,000
- 법인이 실제 계상한 가액 : 1,500,000
- 이동평균법으로 임의변경하여 실제계상 : 1,350,000

상 황	세법상의 법정평가방법	장부상 금액	평가 금액
㉠ 법정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평가액	1,500,000	1,300,000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격	1,500,000	1,500,000
㉢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선입선출법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	1,500,000	1,500,000
㉣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	1,350,000	1,500,000
㉤ 적법한 변경신고를 하고 반영 안한 경우	변경된 방법으로 평가	1,350,000	1,350,000

⇒ 상기에서 ㉡ ㉢ ㉣의 경우는 세무조정이 필요없으나 ㉠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 1,500,000원과 평가액 1,300,000원과의 차액인 200,000원만큼을 손금산입하는 반면, ㉢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1,350,000원과 평가액 1,500,000원과의 차액인 150,000원만큼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다.

## (2) 선입선출법의 적용 범위

### ① 일부 재고자산에만 적용

법정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은 법인이 재고자산 각목별이나 영업장별 또는 영업종목별로 법인이 신고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재고자산 각목별 및 영업장별 또는 영업종목별로 법인이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만 선입선출법 법정방법을 적용한다.

### ② 기간별 원가계산의 경우에도 적용

법인이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 원가계산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동

기간에 따른 제품제조원가를 선입선출법 가액으로 계산한다.

③ 법인의 단순착오시의 선입선출법 적용배제

법인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평가방법 자체의 적용문제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단순한 기장이나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만을 장부상 수정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 4. 재고자산평가차이와 외계·세무처리

### 1) 재고자산평가손익

① 재고자산평가이익

세법상의 규정대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이 기업의 장부가액보다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이익계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익금산입 ⊕유보라는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정 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평가차익만이 익금에 가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저가법 적용시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기업회계상으로는 저가기준 적용시의 시가하락차액을 평가손실로 하여 장부잔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이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또한 적법신고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이 기업의 장부기재금액보다 낮은 경우도 평가손실은 손금산입된다. 이밖에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도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법인이 적법신고방법이 아니라 임의변경 및 타당법 계산금액이 당초의 적법방법의 금액보다 높다 하여도 큰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지는 않는다.

## 2) 재고자산평가액 장부금액 (법 제42조제3항제1호)

### ① 파손·부패·불량시 장부상의 감액기장 및 손금산입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법인의 평가방법적용 여하에 관계없이 평가손실을 감액하고 손금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순재산이 감소하면 손금산입하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되면 제값에 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순재산이 감소한 부분의 금액은 평가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고자산의 파손이나 변질 등은 법인의 특별한 상황으로서 법인순자산의 객관적 감소사유이므로 손실발생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② 부패·파손·변질 등의 객관적 증거입수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변동사항 모두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법인 내부의 상황에 의한다. 재고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을 위해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증거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재고수불부나 법인의 내부재고 장부에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회계처리나 장부반영 및 내부기안 모두가 내부적 증빙자료에 불과하며 세무서 직원이 입회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사실판단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규격의 변화·기간경과에 따른 식품의 변질, 홍수·화재의 발생상황과 재고에의 직접 영향 등 사실과 재고감소영향의 인과관계 연결이 가장 중요한 증거력이 된다.

## 3)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재고자산은 흐름기록의 정확성을 기하더라도 착오·오류·도난·파손·손실 등의 여러 이유로 재고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재고감모손실이라 하는데 법인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든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재고감모손실이 법인의 정상적 업무흐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제조원가나 매출원가로 혹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적정배분 혹은 반영된다. 그러나 천재·지변·도난·특별사고 등과 같이 비정상적 사유

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손금 반영한다.

#### 4) 재고자산누락 및 가공자산계상

##### ① 재고자산 실제 누락액의 익금산입

재고자산 부족과는 달리 재고자산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법인의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수량이 많은 경우, 재고수량이 장부상으로는 누락된 상태로 되어 누락된 부분이 법인에 반영되는 경우 익금산입 된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누락의 원인은 오류·착오 등이 있고 재고가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손금처리된 경우도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상 누락수량 금액을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이익 등으로 계상하고 재고에 반영하면 자동익금산입되므로 별다른 세무처리가 필요없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내부유보처분후 향후 재고손실에 따라 손금추인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상당수 법인이 실제 누락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잡수입 등으로 회계처리 반영하고 있다.

##### ② 재고자산의 가공계상 및 부족액 익금산입

법인의 재고자산이 장부상에만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이미 사외유출된 가공자산은 이미 매출된 것이지만, 매출액이 익금반영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미 익금에 산입된 것은 이월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재고자산의 실제 부족부분이 사실로 매출된 것이라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실제 귀속자에 대한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 III. 유가증권의 평가

#### 1. 유가증권 평가방법 개요

##### 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평가반영

유가증권은 기업경영활동에서 일반생산제조 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여유자금

의 운용수단으로 활용된다. 환금성이 높으므로 언제라도 손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재고자산과 같이 시행령의 특별규정에 의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은 각종 실물의 경영활동 흐름이 비교적 다양하여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유가증권은 문서나 증서로 되어 있고 보관 및 실제 사용방법이 단순한 편이므로 몇 가지의 평가방법만이 규정되어 있다. 유가증권 중 일반주식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하여, 채권의 경우는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취득원가개념이다. 즉, 유가증권의 세법상 평가는 모두 취득원가로만 하는데, 재고자산 계정이라도 매매목적·장기보유목적·상품유가증권 등 모든 경우에 원가주의가 적용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인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시가에 따른 정상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③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규정의 모두 준용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증권회사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회계개념으로는 일반재고자산과 동일하지만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5조제2항은 유가증권 평가방법신고, 변경신고, 적용방법 등을 모두 재고자산평가방법인 제74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턴 3개월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정방법인 총 평균법

재고자산의 경우 법인의 임의적용이나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지정평

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그러나 유가증권평가방법의 경우는 신고 안한 경우 지정방법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없이 평가 변경하면 총평균법 적용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단기보유·장기투자 및 업종관련없이 모든 유가증권의 평가적용 단일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재고자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분류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라도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매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도 유가증권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장기보유목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상품 일종의 재고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도 모두 유가증권평가방법만 적용한다.

## 2. 유가증권의 범위

① 재산적 가치가 변동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특정화폐적 가치나 실물적 가치 및 사용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유통문서인바, 대부분은 화폐적 가치가 기재되어 있어 현금등가물로도 사용된다. 화폐나 금전의 유통이나 거래를 위한 어음·수표·현금교환권 등이 있고, 재산권한의 표시인 주식·증권지분권 등이 있으며 물건 대체증서인 선하증권·화물상환권 등이 있다.

② 유가증권매매·단기투자가 목적인 법인도 유가증권평가방법 적용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금융·보험회사나 증권회사이다. 즉,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매매목적으로서 회계학상으로는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상 평가방법은 유가증권평가방법만 적용한다. 따라서 단기보유매매목적이거나 장기보유투자목적에 관계없이 유가증권에 대한 세법상 차이 규정은 없다.

### ③ 매매목적의 개념

세법상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재고자산이란 법인의 정상적 활동과정상 수익창출을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 및 소모되는 자산이다. 각 법인은 나름대로의 주요 업종을 갖고 있는데, 유가증권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증권회사,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와 은행들이다. 이밖에 연금지급 등 자산운용 사업자도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라 불린다. 결국 유가증권을 경영지배나 사업확보 목적이 아닌 단기 혹은 중기 자금운용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지만 유가증권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일시적 소유의 상장유가증권도 재고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④ 기업회계상·세법상 유가증권의 범위

세법상 유가증권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주식, 채권 등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여러 가지 증권을 포괄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유가증권이라고 보면 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 권】

-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 대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밖에 상법상 설립된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구성원인 사원의 출자지분과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회원의 출자지분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또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부예의 등록을 통하여 양도하는 공사채나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징수대상이 되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권리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 3.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결정

유가증권도 일반 재고자산과 같이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매입 대가 및 제반 부대비용을 취득가액 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데 일반자산취득가액 결정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결정도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과 같이 총 취득원가를 유가증권가액으로 한다.

#### 1) 연금출자 및 연물출자시 정상가액·교부주식가액

법인의 신규설립이나 증자시 납입자본금의 대가로서 주식을 받는데 이렇게 받는 유가증권 가액은 출자납입액이다. 유가증권 취득시 출자금액불입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당해 불입금액총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여기서 불입금액이란 당해 유가증권에 할증금이나 프리미엄이 부가되면 액면가액에 이를 포함한 발행 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시 출자되는 현물의 평가액이 너무 과대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허약한 자본구조가 된다. 따라서 현물출자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확인보고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 2) 타인으로부터의 취득

##### ① 정상매매계약을 통한 취득

신규설립이나 추가증자에 따라 불입된 자본금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은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 즉, 제3자간에 자본금이나 주권·주식이 매매될 수 있는데 이 때는 그 유가증권 매매에 소요된 총 거래대금이 취득액이 된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당초 발행법인이 아닌 다른 기존 보유 자로부터 중도에 취득하거나 기타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거래원가에 유가증권의 취득에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수수료·대금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 교환방식에 의한 취득

교환당시 받을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인 정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받을 주식의 정상가액과 줄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교환차손익으로 특별손익 회계처리하여 당기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3)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한 취득

#### ① 합병으로 인한 취득

상법상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거래에서 적격합병요건을 갖춘 경우를 장부가액으로 하고, 비적격합병 시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

보유채권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주식 취득하는 경우도 받을 채권과 주식을 교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취득한 주식의 정상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보아 세법상의 대손처리요건을 충족시키면 손금산입한다. 반대로 동 정상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채권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초과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③ 증여 기타 무상취득

증여나 기타 무상취득도 쌍방간에 교환되는 화폐등가물이 없는 경우이므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 주식장기합부매입시의 지급이자

기업회계에서 현재가치개념이 도입된 이후 1995년부터는 법인세법도 현재가치개념이 적용되고 있는데 장기합부거래 등에서는 기간이자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거래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그러나 주식자체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구입결정 이후의 자금사정때문에 지

출된 비용이라면 이는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외비용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4)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변동 및 수정

##### ① 장부상의 취득단가 변동 및 수정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취득원가 등에 의거 장부가액을 기장하므로 주식 등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증자 및 합병시 최초의 투자주식에 부가하여 새로운 주식이 교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보유현황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신주취득의 원인인 구주식을 포함하여 새롭게 교부된 주식과 동일 종류의 주식전부를 같은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특히 향후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시 수정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나 세무상 유가증권 매각차손익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 ② 유상증자시의 평균취득단가 수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소유자에게 추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것인데 신주발행에 따라 구주의 가액이 하락하는 권리락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액도 구주의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도 세법상으로는 구주와 신주의 장부상 단가를 균일화하여 장부가액을 다음의 산식으로 수정한다.

##### [신·구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 1주당 종전 장부가액} + \left( \frac{\text{신주 1주당의 불입가액}}{\text{교부받은 신주식수}} \times \text{구주 1주당 교부받은 신주식수} \right)}{1 + \text{구주 1주당 교부받은 신주식수}}$$

##### ③ 이익잉여금 및 기타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취득

이익잉여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자기자본에서의 항목변경에 불과하며, 그래도 이러한 무상주취득가액에 대해 주권이 교부된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 액면금액이나 출자금액을 익금산입하며 이때 세무상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신·구주식의 자본전입 후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기존 장부가액} + \text{구주식 1주에 대한 신주배정비율} \times \text{신주식액면가액 (의제배당금액)}}{1 + \text{구주식 1주에 대한 신주식배정비율}}$$

**④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취득**

자본준비금(기타 자본잉여금 제외)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토지 제외)은 의제배당소득의 익금산입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자본준비금(기타 자본잉여금 제외)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할 때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항목이다.

당해 무상주취득에 따라 법인소유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그러나 토지재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익금산입되며, 익금산입된 금액이 감안되어 단가수정된다.

**[신·구주식의 자본전입 후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의 기존 장부가액}}{1 + \text{구주식 1주에 대한 신주식배정비율}}$$

**⑤ 주식분할시의 평균단가수정**

주식분할시 발행되는 주식은 각 주주의 보유주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된다. 각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고 1주당 장부가액만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분할 후의 신주식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기존 장부가액}}{\text{구주식 1주에 대하여 교부한 신주식수}}$$

**⑥ 주식병합시의 평균단가수정**

주식병합시 기존 주주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며 1주당 장부가액만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 병합후의 신주식 1주당 장부가액 = 구주식 1주당 종전 장부가액 × 신주식 1주에 대하여 소멸되는 구주식수

⑦ 법인합병시의 평균단가수정 합병신주만을 취득하였을 경우

피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 법인주주가 신주식을 교부받는다.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을 합병법인의 신주식으로 교환 취득하였다면 당해 신주식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따라서 합병교부금이나 의제배당금액이 적절히 가감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신주식 1주당 장부가액]**

= 구주식의 기존 장부가액 ⊖ 합병교부금 혹은 ⊕ 의제배당금액

⑧ 유상감자

유상감자시는 환급이나 분배받은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순장부가액을 계산한다. 이때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환급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하며 유상감자시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유상감자 후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종전 장부가액} \times \text{유상감자전 주식수}) - \text{환급액}}{\text{유상감자후 주식수}}$$

⑨ 무상감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무상감자로 보유주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의 전체 장부가액은 감액처리하지 않고 1주당 금액만 상승된다. 당해 주식처분시에만 한꺼번에 손익으로 반영한다. 무상감자 후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무상감자 후 기존주식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종전 장부가액} \times \text{무상감자전 주식수}}{\text{무상감자후 주식수}}$$

## 4.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①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개별법 및 투자회사는 시가법

다음의 시행령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서 개별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이나 시가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의 경우만은 개별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보유법인이 금융업이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이 적용되며, 단기보유매매목적이나 장기보유투자목적이어도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는 원가법이 아니고 시가법에 의한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도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에 의한다.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개별법은 본질적으로 시가법이 아니고 원가법 평가방법이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011. 3.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 제 (2009. 2. 4)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2011. 3. 31 개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에 대해서는 앞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서 적용방법이나 실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 ② 평가방법신고·변경, 강제적용 등 재고자산 평가방법준용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절차 및 기타의 특별사항에 대해 모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시행령 제75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 ◎ 유가증권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최초 연도 법인세신고기한
- ◎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3개월 전까지(12월말 법인은 9월말까지)
- ◎ 강제방법은 총 평균법임 : 적법신고 안한 경우, 적법신고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 적법기한내 변경신고 못한 경우
- ◎ 적법 기한경과후 변경신고서 제출 : 신고한 당연도까지는 종전방법, 다음 사업연도부터만 변경신고방법 적용됨.

## ③ 총평균법 등의 법정평가방법의 적용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을 법정방법으로 한다. 반면 유가증권의 경우는 평가방법 무신고·임의적용·임의변경시 법인장부상의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원가법 중 총평균법 등으로 한다.

구 분	적용하는 법정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법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li> <li>•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li> <li>•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변경하여 계산한 경우</li> </ul>	<p>총평균법으로 평가한 평가액으로 세무조정</p> <p>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장부상계산액)으로의 평가액 중 큰 금액</p>

## ④ 기업회계상의 유가증권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공정가액, 즉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손익은 장부증액·감액 등으로 반영해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상 반영안하면 세무상으로만 익금 ⊕유보, 손금 ⊖유보처리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1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6.29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30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⑤ **유가증권 계정과목 처리와 손금 및 익금비교**

계정과목 및 구분 분류	기업회계처리	세무처리
일반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 등)	취득원가주의(평가차손·이익이 이유 있으며 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라면 손익계상 가능함)	원가와 저가법 선택 →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가능, 평가이익의 익금산입은 불가능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유가증권(일반기업)	시가주의평가(평가차손·이익의 손익계상)	원가주의강제, 평가차손의 손금부인, 평가차익의 익금부인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금융기관 : 은행·증권·보험·종금)	취득원가반영 후 : 금융기관회계처리규정으로 저가평가강제(손실계상)	금융기관이라도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별도의 유가증권방법으로 적용하므로 평균법 등 적용(원가주의 적용)
투자유가증권, 장기보유유가증권	취득원가주의(시장성주식만 시가주의)	취득원가주의 강제함(평가손익은 손금부인·익금부인).



## 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유가증권평가방법 비교

상기와 같이 기업회계상으로는 유가증권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평가손익의 회계 및 세무처리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기업회계상의 평가방법	세무상의 평가방법	
당좌자산 중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적용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만 적용	
재고자산 중 상품 유가증권	금융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매매목적)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및 시가법 적용 가능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상장·등록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비상장·비등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투자자산 중 투자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관계회사주식, 관계회사사채, 관계회사 출자금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계상(시가법 적용),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취득원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집합투자재산	시가법
			변액보험 등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기타의 유가증권	매매목적이 아닌 것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⑦ 기업회계상 시가·공정가 적용과 세무조정

유가증권에 대해 기업회계는 원가반영후 결산기말에는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 혹은 평가이익을 당기손익계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무조건 원가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만 계산하므로 기업회계상의 평가손실계상액은 손금부인되고 평가이익은 익금부인되어 나중에 실제 처분될 때까지 유보·이연된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구 분	법 인 세 법	기 업 회 계 기 준
적 용 대 상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원가법 적용(총평균법·이동평균법·개별법) *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 적용함.	모든 유가증권(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 재고자산 중 상품유가증권, 투자자산 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 및 출자금)에 공정가액계상(시가법 적용)
적 용 요 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중 부도난 경우만 시가반영가능	당좌유가증권은 무조건 감액함. 단,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 평가금액을 계상
시 가 의 정 의	없음(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공정가액으로 보는 시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 혹은 직전 거래일 증가
적 용 방 법	총액기준으로 원가반영	총액기준으로 시가반영
손 익 반 영	평가손실의 손금부인, 평가이익의 익금부인	평가손익의 당기반영

⑧ 기업회계상 시가적용의 증액·감액처리

기업회계상으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이나 시가로 평가하면 당연히 평가손익이 계산되는데 유가증권의 총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이때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직접 감액하고 평가이익은 증액한다. 취득가액은 주식 기재한다.

⑨ 기업회계처리에 대해 세무조정여부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매·단기투자목적 여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은 1년내 처분목적이면 당좌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만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단기자금운용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모두 유가증권평가방법인 원가법만 적용된다. 매매·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권상장·협회장외등록주식에 대하여도 기업회계상 원가법 중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면 평가손익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사항도 발생되지 않는다.

## 5. 유가증권 평가방법신고 등

###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내용대로 적용

유가증권 평가방법신고, 변경신고, 평가방법 아닌 다른 방법 적용시의 세법상 방법 적용,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의 적용방법 등은 모두 재고자산평가방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이 종전에 적용하여 오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직전까지만 변경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사항도 없어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유가증권도 매년의 변경신고 요건만 지키면 되며, 계속 적용의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변경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그 변경사유가 단순히 기업이익의 조작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정당한 것에 한하여 회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 ② 기존 적법방법의 변경신고기한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직전

법인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이 09년 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인 09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직전인 09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당연도 변경신고로 당연도부터 변경적용가능하다.

### ③ 기한 경과 후의 변경신고효력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러나 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를 한 법인이 변경한 방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면 그 새로운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받고자 하였던 사업연도에 한해서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이나 변경 전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세무상 재고자산가액으로 본다. 물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바, 일단 변

경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다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 6. 유가증권평가차익의 외계·세무처리

### ① 시가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세무상으로도 자산의 임의평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자산평가증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발생되지 않는데 취득목적·보유목적·취득회사의 영업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원가주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 ② 임의평가이익 및 모든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뿐아니라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도 법인이 스스로 평가이익을 계상하여도 평가이익을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저가매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특수관계자 아닌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저가취득주식에 대해 평가이익을 계상할 수 없다.

### ③ 저가매입시 실제대로 반영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도 실제대로 기록한다. 그러나 본 법 제15조 제2항제1호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시가미달)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달차액은 차변에 취득원가로 반영하고 대변에 이익계상하여 익금산입한 후 유보시킨다. 향후 매각시 ⊕유보 추인하면서 손금으로 조정된다.

### ④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손금·익금부인

모든 유가증권은 원가법(단,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임)으로만 평가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시가·저가 적용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

영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익금불산입하고 나중에 유보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이 아닌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법인이 스스로 평가이익을 계상하더라도 평가이익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 IV. 외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상환 손익

(시행령 제76조)

### 1. 외화거래의 평가 및 상환

#### 1) 외화거래에 대한 세무외계 개요 및 연역

##### ① 외화채권·채무의 개념

외화자산·부채란 외국통화로 표시·계상된 자산과 부채로서 만기일에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 당해 외국통화 및 기타의 다른 외국통화로 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환율이 계속 변동하므로 외국통화로의 평가 및 상환시마다 당초 계상된 금액과의 차액이 양의 숫자나 음의 숫자로 발생하므로 이의 손익귀속시기 문제가 발생한다. 외화자산·부채로 인한 차손익에 대하여 본 법 자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제76조가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국통화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채무를 말하며, 이러한 외화채권·채무의 평가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이나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 ②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역사적 변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외화자산·부채가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장·단기의 구분은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이고, 1년 이후인 것은 장기로 구분하여 93년까지는 손익의 인식방법을 달리 하였다. 즉, 단기로 분류된 외화자산·부채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평가손익은 모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

는 익금으로 산입되나, 장기로 분류된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모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환율조정차계정 및 환율조정대계정으로 각각 이연처리하여 당해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였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화 및 실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외화평가손익은 장단기 구분없이 모두 당기 손익항목으로 손금 및 익금으로 반영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다시 개정하여 장기외화채권·채무평가손익은 자본조정의 ⊕·⊖로 한후 실제 상환시 손금익금처리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와 IMF한파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재무제표상 손실계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개정하여 97년말 재무제표·법인세신고내용부터 장기외화계정은 환율조정차와 대의 금액으로 이연자산·부채반영하여 향후로 이연손익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98년에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99년부터는 기업회계나 세법 모두에서 외화자산부채의 모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하도록 통합하였다. 2008년부터는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평가대상 자산·부채의 범위에서 제외 규정하였다. 이는 미실현손익이므로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을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업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당기손금익금으로 인정한다.

### ③ 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선물환거래의 경우는 거래발생시 계약상의 환율로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는데 세법상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선물환거래의 계약일 및 결산일 중 중간에는 회계 및 세무상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다가 결제일에 모든 손익을 한꺼번에 인식한다.

### ④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내국법인이 해외에 영업지점이나 해외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화폐성·비화폐성법 및

대차대조표 현행환율법 및 재무제표 전체 현행환율법 등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표시 한다.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을 할 수 있고, 일단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 외환거래차손익·귀속시기의 본 조 규정이유

### ① 손익귀속시기 문제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일반 규정인바, 본 조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규정하여 어떤 금액으로 손익반영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외화자산·부채는 본 조 관련 시행령 제76조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반하여, 본 시행령은 외화부채의 지급시점이 아직 아닌데도 현행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일종의 현행 시가 적용대상이다).

### ② 손익귀속시기의 단순화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많은 법인이 수출과 관련된 거래 및 관련 계정과목이 있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을 모두 당기 손익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단순화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은 1990년 3월 29일자로 개정된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으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단순화하고 있는데 세무회계도 기업회계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므로 기간손익의 차이 이외에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장기외화채권·채무평가손익은 기업회계 처리내용대로 당기손금·익금으로 하지 않고 자본조정계정으로 ⊕·⊖ 처리한 후 실제상환 변제시 손익으로 반영하는 회계·세무를 96년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기존 기업회계기준 제76조는 97년 12월 24일 전격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장기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가감하여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이연자산·이연부채로 자산부채계정에 반영한 후 감가상각·환입하는 개념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IMF체제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면 자본이 잠식되는 등 너무

나쁜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연자산·이연부채로 조정한 것이다. 세법도 이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97년 12월 31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8년까지 적용하였다. 그러나 99년부터는 기업회계와 세법 모두가 당기손익반영으로 단순화하였다.

##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 외화자산·부채평가의 개념과 규정

#### ① 외화계정의 위상과 평가차익의 발생원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결정은 결국 법인의 제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권리·의무의 흐름 및 확정시기의 판단개념인데, 외화자산·부채도 넓게는 이러한 자산평가 및 부채평가의 범주에 속한다. 각 국간 통화별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계속 변동하며, 적용환율도 전신환 매도율(TTS), 매입률(TTB) 기준율, 재정환율, 집중률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함으로써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이가 발생한다.

#### ②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 변동 비교

시행령 제76조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외화평가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현행 법인세법	현행(99년부터) 기업회계기준	구기업회계기준 (97·98년 F/S)
평 가 ( 환 산) 대 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관련 파생상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
적 용 환 율	외국환거래규정상 의 매매기준율 등	대차대조표일의 적절한 환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
평 가 ( 환 산) 차손익 의 처리	단기 외화채권·채무	당해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당해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기타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대상 아님)	당해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장 기 외 화 채 권·채 무	99년 부터는 당연도 손익이 원칙(평가차 손익은 당기 손금·익금임)	전액 당기손익원칙	장기채권·채무평가손익도 단기반영이 원칙. 그러나 장기채권·채무평가손익은 이연자산·이연부채 평가 반영후 감가상각 가능
기 존 장 기 외 화 채 권 채 무 손 익	98년까지분의 장기채권·채무평가손익은 당기 항목으로 손익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이연부채 처리후 감가상각·환입처리함.	98년까지분도 99년 말 재무제표상 전기이월잉여금에 가감하여 표시(없엠)	

## 2) 금융기관의 외화채권·채무평가대상 범위와 적용원율

### ①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의 규정

금융기관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매매기준율 등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액에 대해서 장·단기 모든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손금익금 반영하며,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다.

####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자 산 기 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금융기관	금융기관 외	금융기관	금융기관 외
①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 ①, ② 중 선택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2010. 3. 31 신설)

## ② 관련 기업회계기준 규정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23.10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3.11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3.12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23.17에 따라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③ 구상무역 판매금액 매입가액은 대고객 외국환매입률 적용

구상무역거래인 경우 외화수입금액 및 수출물품판매금액계산 외화채권·채무평가는 다음과 같다.

- ① 선수출 후수입의 수출금액 : 수입물품에 대해 수출품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금액으로 수출판매금액계산
- ② 선수입 후수출의 수출금액 : 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하여 수출판매금액계산
- ③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 수출물품판매금액(상기 ①, ②) ⊕ 수입관련 부대비용합산
- ④ 구상무역 수입·수출이 연도가 달리 걸리는 경우 :

$$\begin{array}{l} \text{수출물품} \\ \text{판매가액} \end{array} = \text{①} \cdot \text{②금액} \times \frac{\text{이행부분}}{\text{총 수출물량}}, \quad \begin{array}{l} \text{수입물품} \\ \text{구입금액} \end{array} = \text{③금액} \times \frac{\text{이행부분}}{\text{총 수입물량}}$$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 ④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외국통화상환 대상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하여 손익에 반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및 채무를 말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 ⑤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가 대상으로, 외국통화로 확정되어 있어 나중에 원화로 실제 수령하거나 아직 지급이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의 거래가 외국통화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수령 또는 지급할 실제금액이 원화로 확정되었던 것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라 하여도 국내 통화로 궁극적으로 환산하지 않

아 결국 외화환산차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 시행령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현지통화를 차입·사용·상환하는 경우라면 국내 통화의 지급의무가 없고 국내통화로 환산하지 않아 환산차손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기업총체적인 입장에서 해외사업 재무제표의 환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⑥ 외국통화상환 권리·의무의 존재

외국통화로 상환하거나 상환받을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의무가 없는 외화나 외화표시예금 등의 외국환은 제외된다. 외화채권·채무가 아닌 일반 외국환은 외국환은행에 실제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외환차손익을 귀속시키며, 법인이 외화거주자에게에 예치한 외화도 상환할 채권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이 아닌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등도 포함한다.

#### ⑦ 대외지급수단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수표·은행권·환어음·우편환·약속어음·신용장 기타 지급지시 등의 지급수단을 말하며,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외화채권은 외화로서 표시된 각종 채권이나 보험증권 등을 말한다.

#### ⑧ 통화지정 차관

국제금융기구에서 도입되는 공공차관은 차관잔액의 결정에 있어서 종래에는 차입 당시 각국의 통화별 인출액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1982년부터 일부 차관에 대하여는 차관공여자가 차관발생 당시의 각국 통화별 금액에 관계없이 회수시에 상환할 통화를 결정통보하고 채무자는 상환시에 차관공여자가 지정하는 각국 통화로 상환하는 제도가 생겼다. IBRD에서는 이러한 통화집중제도를 Currency Pooling System(CPS)이라 하고 ADB의 경우는 Exchange Rate Pooling System(ERPS)라고 한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외화차입이나 상환금액이 없이도 외화채무

차체 금액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마다 변동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동 외화 차입금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의 원화상당액과의 차이는 외화평가손익이며 본 시행령의 적용대상이다.

⑨ 평가대상 채권·채무의 요약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기업회계상의 각 계정과목 중 평가대상을 살펴보면, 화폐성 자산이란 현금·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 화폐가치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화폐로 고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미수수익·지급보증금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선급금은 화폐성 항목으로서 평가대상이다. 화폐성 부채 중에서는 현지차입 현지사용분·일반선수금 등만 평가대상이 아니고 외상매입금·지급어음·미지급금·차입금·예수금·미지급비용·수입보증금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선수금은 모두 평가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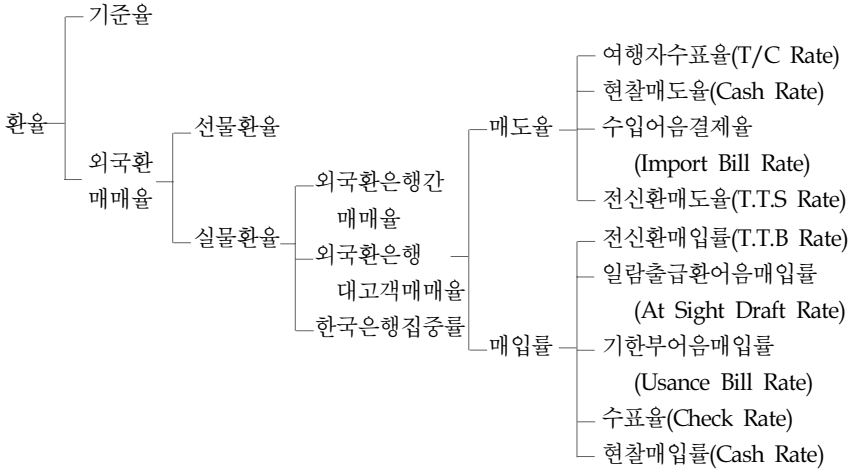
⑩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 등

외화채권·채무가 상환될 때에는 상환시 외부거래처 및 금융회사와의 최종 결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하므로 적용환율 문제에 이의가 없으나,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평가시는 당해 법인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외부적 환율증거가 없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이나 제정된 매매기준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환율구조

일반적인 환율체계에는 전신환율을 필두로 매매기준율·현찰률·수표율·어음결제율 등 여러 거래조건에 따른 환율이 많다.

일반체계는 다음과 같다.



상기 환율체계에서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이란 외화채권자가 외화채권을 회수하여 원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외환증서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지급하고 외환증서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따라서 외화채권의 평가시에는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전신환율로 사용한다.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이란 외화채무를 갚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증서를 매입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외환증서를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시에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며 전신환율을 사용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연도말의 세법상 평가를 위해서는 매대기준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3) 금융기관 등의 외화채권·채무평가손익 귀속연도와 계산방법

#### ① 일반원칙 : 평가손익의 당해 연도 손익반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채권·채무)의 사업연도말 평가차익과 차손금액은 일반적으로 환율이 늘 변동하며 살아 움직이므로, 바로 그때의 손익으로 반영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은 환율차손익은 외화환산

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원칙규정하고 있다.

98년까지는 장기외화자산부채에 대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손실과 환산이익은 차기 이후 여러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 환율조정차·대의 이연자산·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고 선택 규정하였으나 99년부터 폐지하였다. 96년까지는 환율평가차손익을 자기자본에서의 자본조정항목에의 가감(⊕, ⊖)항목으로 처리하던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급격히 개정한 것이다. 법인세법도 98년까지(99년 11월 30일까지 종료하는 연도 등임. 9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경우는 아님)는 회수·상환기일이 1년 이후 도래하는 장기외화자산부채에 대해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잔존회수·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한다고 강제규정하였는데 98년까지의 기존 환율조정차·대 계상분은 종전대로 잔존회수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환입한다.

② 외화평가손익의 당기·장기반영 여부에 대한 회계·세무비교(99년 이후, 98년까지)

외화자산부채종류 처리	세무회계	기업회계	세무조정여부
외화평가손익 반영원칙	당기반영규정	당기반영원칙	외화계정을 모두 당기반영하므로 세무조정없음.
단기외화자산부채	당기손익반영원칙	당기손익반영원칙	세무조정 없음.
장기외화자산부채	당기손익처리	모두 당기손익	세무조정 없음.
98년까지	이연처리(98년까지)	이연처리(98년까지)	세무조정 없음.
연말 현재 유동성장기부채(연말 현재 1년 미만)(98년까지)	단기부채로 보므로 전액 당기손익반영(98년까지). 99년부터 당기손익	선평가후 당기분만 손익반영(98년까지). 99년부터 당기손익	연말에서 1년내 이연손익에 대해 세무조정 있음(98년까지). 99년부터 세무조정없음.
적용환율	매매기준율 등	적절한 환율(TTS, TTB 기준환율 등)	매기 계속적용하면 문제 없음.

③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의 계산방법

외화자산·부채는 통상 발생일 및 직전 평가일의 적정환율로 장부상 반영된 후 당해 금액에서 사업연도말 현재의 적용환율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이 평



가손익이 되는데 외화자산·부채의 각 사업연도 평가손익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외화금액 × (발생일 및 직전 평가일 현재의 환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즉, 외화자산에서는 전 평가기준·재정환율 > 현평가환율이면 차손(손금), 외화자산에서는 전평가환율 < 현평가환율이면 차익(익금), 외화채무에서는 전평가환율 > 현평가환율이면 차익(익금), 외화부채에서는 전평가환율 < 현평가환율이면 차손(손금)이 각각 계상되어 이를 합산한 금액이 손금 및 익금에 반영된다.

#### ④ 외화환산시 적용할 적절한 환율의 정의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실제로 적용받는 환율은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로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적용되는 매도율과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 때 적용되는 매입률이다. 따라서 외화자산의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하고 외화채무의 경우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이 외화를 구입하거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하거나 수령할 원화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적절한 환율」이란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률,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 매매기준율 등 기업의 입장에서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합리적으로 환산하기에 충분한 환율이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한번 채택된 환율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화자산은 대고객매도율로, 외화부채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는 방법 등과 같이 두개의 환율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

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고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는 미화의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미화 이외의 외화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세법상은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신고조정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매매기준율 등을 기업회계기준의 적절한 환율로 보아 이를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일자 최초 매매기준율 등이 적용된다.

#### 4) 외화채권·채무상환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상환사업연도에 귀속

장부상 계상된 외화채권·채무가 상환되는 경우라면 당해 상환으로 인해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상환으로 인한 발생 차손익은 상환된 날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귀속된다. 상환차손익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상환차손익 = 외화채권·채무 외화금액 × (상환일 환율 - 발생일·직전평가일 환율)

여기서 상환시 환율을 위한 특별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수취하여 받거나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장부에 원화로 기장되는 금액이 적용환율이 되는 것이며, 차액금액이 상환차손, 차익이 된다.

##### ② 차환시 기존 채무금액 계속기장

상환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의 경우와 같은데 차환방식으로 기존 채권·채무를 상환한다면 이는 기존 채권·채무의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환이나 변제시점이 아니며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않다. 그대로 놔둔 후 연말에만 평가하면 된다.

###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 1)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방법

##### ① 3가지 기준적용방법의 통칙상 규정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당해 지점을 당해 내국법인에 합산하여 결산을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적법한 환율로 평가한 후 원화로 환산하여야 정확한 과세소득이 계산된다.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통칙에 의한다. 한번 선택한 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 및 환산차손익의 처리방법 비교표 ▣

구 분	제1방법 (화폐성, 비화폐성법)	제2방법 (재무상태표 현행환율법)	제3방법 (재무제표 현행환율법)
① 환산방법	화폐성 자산·부채(당좌자산, 채권 및 채무)는 종료일 현행환율로 환산하며,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발생일·대체일 등 역사적 환율로 환산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로 환산함.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
② 환산차손익의 처리	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B/S, P/L상의 차액 등)은 각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좌 동

법인이 상기의 세 방법 중 하나를 계속 적용하지 않거나 일단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제3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하나,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3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제3방법으로 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② 화폐성·비화폐성구분 환율적용방법 : 당해 사업연도 귀속

1방법은 채권·채무 및 당좌자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외국환매매기준율인 현행 환율로 환산하며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계정항목 등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인 역사적 환율로 환산한다. 이러한 원화환산으로 인한 환산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되나 장기채권·채무의 환산차 손익은 잔존상환기간에 균등배분하여 손익에 반영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현행 환율적용방법 : 환산차손익의 지점폐쇄시까지 이연

2방법은 재무상태표항목만 현행 매매기준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기준율로 한다. 여기서 손익항목환산을 위한 평균 외국환대고객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대고객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일수, 지점폐쇄

2환산방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1방법과는 달리 전액 해외사업 환산차 및 해외사업환산대로서 국외지점별로 이연처리하여, 이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폐쇄시의 손익으로 한다.

⑤ 재무제표의 현행 환율 적용방법 : 환산차손익의 지점폐쇄시까지 이연

3방법은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방법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현행 환율인 외국환대고객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항목에 따라서 현행 환율이나 역사적 환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 간편법이다. 이때의 환산차손익의 세무처리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2환산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⑥ 재무제표 환산방법간의 변경과 재무제표 현행환율 적용방법

어느 법인이라도 상기 1·2·3방법 비교대로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세가지 환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조세부담 회피의

의도만 없으면 어느 정도 임의로 변경가능하며, 임의변경 사업연도 이후부터 변경된 환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는 법인의 판단 및 결산정책문제이고 이로 인해 과세소득에만 영향이 별로 없다면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1방법, 2차 사업연도에는 2방법을 적용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감소 안되어 2방법이 인정된다면 3차 연도에 있어서는 2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2) 완산차액의 결산반영

### ① 결산재무제표의 계상

1·2·3방법 중 어떠한 환산방법을 적용하여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더라도 환산차익 및 차손의 차액이 계산되는데 계산된 환산차손익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한다.

### ② 결산 미반영은 불인정

1방법에 의해 계산된 환산차손익 중 장기외화채권·채무에 대한 것은 잔존상환기간에 걸쳐 이연처리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상환기간에 걸쳐서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산에 당해 계정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된 것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2·3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산차손익은 모두 계속적으로 이연됨으로써 각 사업연도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지점폐쇄시에는 언제나 손익에 반영되므로 결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만약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상각액 또는 환입액도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계산이 본 법상 강제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법인이 적정한 환산차손익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경정할 수는 있는바, 상각 또는 환입액 등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 차원에서의 경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결산반영이 안되었다면 법인차원에서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3) 기업외계기준의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은 해외지점·해외사업소 등의 외화환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화자산·부채의 일반평가방법(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앞에서 설명한 제1방법 및 제2방법(통칙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23.15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23.14와 문단 23.16을 적용한다.

23.16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23.14에 따라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23.17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3.18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그 외의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4) 외화거래에 따른 안을

#### 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IFRS에서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주요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한다.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면 외화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는 외화환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 기능통화의 결정방법 ▣

주요지표	보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li> <li>•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li> <li>•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보조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li> <li>•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li> </ul>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중에 발생한 외화거래를 원화로 회계처리하고, 기말 결산시 이를 결산일 환율로 다시 환산함으로써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 ② 외화거래의 인식과 환산

IFRS에서는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외화거래를 기록하며, 보고기간말에는 먼저 회수 또는 결제되지 않은 자산·부채가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화폐성항목이란 받을 권리나 지급의무가 화폐금액으로 확정된 항목으로 예금, 대여금, 대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비화폐성항목은 받을 권리나 지급의무가 아직 화폐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이 해당된다.

화폐성 항목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지만, 비화폐성 항목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어떤 측정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적용환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해서 측정했다면 거래일의 환율 즉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했다면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관련 환율변동손익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는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기능통화가 달러화이고 표시통화가 원화인 국내기업의 경우 원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는 기말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환율 사용 가능)을 적용하고 외화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외화환산차이는 재무제표 항목간의 적용환율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뿐, 실제 이 금액만큼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 기능통화 변경사례과 환율예시 ▣

- 회사는 K-GAAP에서 IFRS로 전환하면서 기능통화제를 도입하였으며, 기능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 매출액 \$100, 매출원가 \$80 (대부분의 거래는 \$로 이루어짐)
- 환율 : 기초 1,000원/\$, 기말 1,500원/\$, 평균 1,200원/\$  
(영업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환산하지 않음)
- 기초에 자본 100,000원, 외화 차입금 \$100(100,000원)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영업시작함.

사례에서 보듯이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된 IFRS 재무제표에서는 선박(자산) 및 차입금(부채)에 대하여 동일한 환율(1,500원/\$)이 적용되어 환산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K-GAAP 재무제표에서는 선박(자산)에 대해서는 역사적환율(1,000원/\$)이, 차입금(부채)에 대해서는 기말환율(1,500원/\$)이 적용되어 환산손실(50,000원)이 발생하였다.



## 4. 금융회사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완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

#### ①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재무제표 반영

국제거래가 다양해지고 시장정보 및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파생상품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하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통화관련파생상품으로 확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일반법인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세무상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결국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헷지목적의 통화선도·스왑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선택하여 평가손익을 인정한다. 물론 금융회사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스왑도 환산손익을 인정한다.

#### ② 통화선도, 통화스왑거래시 평가손익반영

통화관련파생상품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거래·스왑 및 옵션거래를 말하는데 세법상 평가대상이 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것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다.

#### ③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 등

통화선도나 통화스왑 평가시 외부적 환율증거가 없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원화평가지 계약의 내용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이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을 곱한 금액이 된다.

### 관련법령

#### ❶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여기서 원화기장액은 법인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

## 2)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의 처리

기업회계상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때에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일반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이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외화환산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 ②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시장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36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 (3)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37 문단 6.36에서 차액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1)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 (2)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 (3)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

6.38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 6.36(1)과 (2) 및 6.37(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 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1)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
- (2)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거래)
- (3)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계약

6.39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 유형별로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2)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나 최종수수료(Back end fee)는 계약체결시점의 스왑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 계약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3)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 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 (4)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로 처리하고, 옵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6.40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 (1)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 (2)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치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 V. 부실자산의 감액계산 (법 제42조제3항)

### ① 취득원가·장부가 관계없이 부실요인 감액평가

본 조 제1항·제2항은 특정된 자산(재평가자산 등) 이외에는 모두 취득원가 혹은 임의로 평가하기 전의 세법상 인정된 평가반영금액으로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손금 및 익금을 계산하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취득원가·공정장부가에 의한 손금·익금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임의평가증액은 수입으로 처리했어

도 익금불산입하고, 임의평가손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했어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등으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 부도·회생계획인가나 부실징후 발생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창업자·신기술사업법인이 발행한 주식, 파산법인인 주식 등은 당초 취득원가나 기존 장부가액(평가전 금액)으로부터 감액 요인을 반영하여 감액손실을 손금반영하도록 본 항이 규정하고 있다.

◎ 자산의 객관적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감액손실 손금산입하는 경우(중액요인은 반영불가함)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영업외비용계상(손금산입인정됨)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 → 고정자산평가손실의 특별손실계상(손금산입인정됨)
-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 기업이 된 상장법인주식이나 창업신기술사업 법인주식 → 유가증권평가손실의 영업외비용계상(손금산입인정됨)
- 파산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 → 시가평가에 따라 손금인정(1천원 이하는 1천원으로 평가)

## ② 천재·지변·화재·법령상 수용·폐광 등

고정자산은 불가피한 사유, 즉 천재·지변·화재 등이 발생되어 파손·멸실되는 경우 감액요인이 생기며, 감액손실의 특별손실반영액이 그대로 손금산입된다.

이밖에 다음 시행령은 법령 규정에 의한 수용(강제수용·토지수용법 및 기타 관련법률 등), 폐광이나 광업용 고정자산의 목적사용불가능의 모든 경우에도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항력 사유로 고정자산이 파괴·파손·멸실되는 객관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부도 등 모든 법인의 주식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보유하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 중 창업법인·신기술사업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리고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특수관계라도 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는 감액 허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회사의 주식감액손실도 손금산입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영업외비용처리한 금액은 그대로 손금인정된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9. 2. 4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한다. (2010. 2. 18 신설)

## ④ 재고·고정·유가증권 자산가액·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 계산방법

감액손실은 장부상 금액 $\ominus$ 처분가능시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외 손실이나 특별손실로 계상하며, 그대로 손금인정한다. 다음 시행령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비용·손실·원가계상반영하면 손금산입된 것으로 본다.

- ◎ 재고자산 평가손실=재고자산 장부가액 $\ominus$ 종료일의 처분가능시가
- ◎ 고정자산 감액손실=고정자산 장부잔액 $\ominus$ 종료일의 시가(공시가 등)
- ◎ 상장주식 보유법인 등의 주식평가손실=주식유가증권 장부가액 $\ominus$ 종료일 시가 혹은 총 최저 1천원
- ◎ 파산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법인의 평가감=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 $\ominus$ 종료일 시가 혹은 총 최저 1천원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 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 VI. 자산·부채평가관련 절차 (법 제42조제4항·제5항)

### 1. 자산·부채 평가명세서 제출 (법 제42조제4항)

자산·부채를 취득원가나 법정장부상 기준금액(평가전 금액)이 아닌 금액으

로 평가하는 경우 자산·부채평가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시행령 제74조·제75조·제76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자산·부채평가명세서를 포함제출하면 된다.

## 2. 자산·부채평가차손익의 손금·익금산입 (법 제42조제5항)

- ① 법인의 임의평가차익·익금불산입 ⊖유보 후 → 향후 감가상각비 범위액 및 매각손익에서 익금반영조정
- ② 법인의 임의평가차손·손금불산입 ⊕유보 후 → 향후 감가상각비 범위액 손금추인조정
- ③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기업회계상 당기 비용·수익으로 계상시 별도의 세무조정 없으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처분 또는 상환 등 사외 유출되기 전까지 유보로 처리함.
- ④ 법정평가차손(재고자산·유가증권·고정자산 감액손실) : 기업회계상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그대로 손금인정, 잉여금감액계상하였다면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
- ⑤ 법정평가차익(재평가·보험법상 평가액·재고자산·유가증권 등) :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 특별이익계상반영하면 그대로 익금인정, 잉여금증액반영하면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액 증가로 처분함.